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7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임상순

변 론 종 결 2021. 8. 17.

판 결 선 고 2021. 9. 28.

주 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3,371,8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371,8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E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6. 3. 22. 접수 제4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보전채권

원고는 E이 2013. 11. 19.부터 2016. 3. 16.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E에 대하여 13,371,80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갑 제9호증). 원고는 2016. 3. 18. 이후 발생한 카드대금 채권 역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단지 신용카드가입계약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채권성립이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2016. 3. 18. 이후 발생한 카드대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피고는 카드대금 연체가 최초 발생한 2016. 10. 11. 원고의 카드대금 채권이 발생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모두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함은 변제기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카드대금 채권의 성립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무렵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2. 부동산의 처분

피고는 2015. 12. 11. E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하였고(을 제1호증), 그중 22,863,138원은 2015. 12. 14. F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을 제2호증), 이에 따라 2015. 12. 23. E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위 F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이후 E은 2016.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을 제3호증), 2016.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4호증). 피고가 2015. 12. 11. E에게 지급하였던 23,000,000원은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다.

3. 사해행위 여부 및 범위

그런데 E에게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수익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의 시가는 39,807,600원인데(2021. 8. 10. 감정서),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무렵 22,863,138원이어서(을 제2호증) 차액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바, 구체적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3,371,808원(원고는 2021. 3. 31.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계산하지 않았다)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4,649,540원(2021. 8. 10. 감정서)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2,863,138원을 공제한 21,786,402원 중 적은 금액인 13,371,808원을 한도로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13,371,8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3,371,8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제척기간의 도과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허윤범